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58
----------	------------

2021년 3월 3일
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인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독서 진흥을 위해 ‘주민이 독서를 생활화’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이에 시장의 책무로 사유재산인 지역서점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기 보다 “독서문화진흥”과 “지역문화공간”의 역할을 수행하는 “책문화 환경조성”을 명시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시장은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함(안 제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 “시장은 지역서점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,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지역서점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,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”를 “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문화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를 같은조 제6호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

또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에
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자유 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<u>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문화공간으로 서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영안정 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 제 및 문화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 <u>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 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 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5조(지역서점 지원계획) ① (생 략)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지역서점 지원계획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구 매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<u>제6조의2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 매)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 서점 또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</u></p>

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
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
로 체결할 수 있다.